

①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(신 설)	<input type="checkbox"/> 신탁재산 감면 적용 특례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탁자가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 시 감면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탁자(소유)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실질 지배·통제하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실질 지배·통제하는 경우 시행령 위임 ○ 그 외의 신탁은 수탁자가 사용하는 경우 감면

□ 개정내용

- 감면 요건을 갖춘 위탁자가 부동산을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인 수탁자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취득세 감면 적용
 - (직접 사용 예외) 신탁재산의 소유자는 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“직접 사용” 정의 규정에서 소유자의 범위에 법 제185조에 따른 **위탁자*** 추가

*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의 위탁자

-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「신탁법」에 따른 신탁등기 이행 완료 |
|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(담보신탁) |

- (감면 적용 특례)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개발·조성 및 건축한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더라도 감면 요건 충족여부 판단 시 위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적용

※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